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성평등가족부직제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윤호중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성평등가족부에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,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·지원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 및 양육비 이행지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6급 1명)을 각각 증원하고, 성평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성평등가족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17. ~ 12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성평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30호 중 “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 가해자 교정 및”을 “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2호 중 “여성·아동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”을 “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33호부터 제45호까지를 각각 제35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3호 및 제3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3. 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

34.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

제9조제3항제41호(중전의 제39호) 중 “등록·공개·열람”을 “공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4호(중전의 제42호) 중 “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”을 “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8호부터 제5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8.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49.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50. 「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

다른 인신매매등(이하 이 항에서 “인신매매등”이라 한다)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
51. 「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운영에 관한 사항

52.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·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

53. 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사항

제10조제3항제13호 중 “가출”을 “가정 밖 청소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0.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

제10조제3항제37호부터 제41호까지를 각각 제39호부터 제4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 제21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22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1. 청소년보호·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38.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
별표 1 중 총계 “294”를 “29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90”을 “293”으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279”를 “282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성평등정책실) ①·② (생략)	제9조(성평등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③ ----- --.
1. ~ 29. (생략)	1. ~ 29. (현행과 같음)
30. <u>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 가해자 교정 및 피해자의 치료·자립 등의 지원</u>	30. <u>성폭력·가정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</u> ----- ----- --
31. (생략)	31. (현행과 같음)
32. <u>여성·아동·청소년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및 중앙지원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</u>	32. <u>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</u>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33. <u>공공부문 성희롱·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</u>
<u><신 설></u>	34. <u>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</u>
33. ~ 38. (생략)	35. ~ 40. (현행 제33호부터 제38호까지와 같음)
39. <u>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·공개·열람 및 고지제도의 운영</u>	41. ----- ----- <u>공개</u> ----- -----

40. · 41. (생략)

42. 성교육 및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(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, 이하 “아동·여성폭력등”이라 한다)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·조정 및 시행

43. ~ 45. (생략)

46.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

47. 탈북여성 인권보호교육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42. · 43. (현행 제40호 및 제41호와 같음)

44. -----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·성희롱 등-----

45. ~ 47. (현행 제43호부터 제45호까지와 같음)

<삭제>

<삭제>

48. 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

49.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50. 「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(이하 이 항에서 “인신매매등”이라 한다)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

51. 「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
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제10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·② (생 략)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. 1. ~ 12. (생 략) 13. <u>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·지 원</u> 14. ~ 19. (생 략) 20. <u>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 능 피해의 예방·치료 및 재 활 지원</u> <u><신 설></u> <u>21. ~ 36. (생 략)</u> <u><신 설></u> <u>37. ~ 41. (생 략)</u>	<u>운영에 관한 사항</u> 52. <u>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· 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</u> 53. <u>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관한 사항</u> 제10조(청소년가족정책실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가정 밖 청소년</u> ----- ----- -- 14. ~ 19. (현행과 같음) 20. <u>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</u> 21. <u>청소년보호·재활센터의 운 영에 관한 사항</u> 22. ~ 37. (현행 제21호부터 제 36호까지와 같음) 38. <u>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제 도개선에 관한 사항</u> 39. ~ 43. (현행 제37호부터 제 41호까지와 같음)
---	--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성평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(제1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294</u>	<u>297</u>	+3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290</u>	<u>293</u>	+3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279</u>	<u>282</u>	+3
•	•	•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4